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01호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 0 5 7 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3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1057호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별표 2와 같다”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강료 등”을 “수강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수강료 감면”을 “수강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 각각 “면제”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7.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카드에 올려진 가족을 포함한다. 다만, 1 가정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을 “관련하여”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제10조제2항 중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초빙의”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설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로,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로,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을 “사용 목적 및 사용예정일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사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남동구”를 각각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용일 5일”을 “사용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강좌 운영시간	기준금액	비 고
10시간 이하	15,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시간 이하	30,000원	
30시간 이하	45,000원	
30시간 초과	60,000원	

[별표 4]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수업시작 전 -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전액
		3) 수업시작 이후 -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9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시설명	면적	용도	기준	사용료	비 고
펼침터	154.91 m ²	각종 전시 (갤러리)	1일	30,000 원	◦최대 사용기간 : 15일 이내 (토·일요일 포함)
채움강당	396.88 m ²	강연, 발표회, 공연 등	1시 간	50,000 원	◦휴일 또는 18:00 이후 사용시 사용료 20% 가산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수 강 료 감 면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국가유공자증 가족: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1 가정 당 연 1회에 한함)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접 수 증

접수번호 :

프로그램명	(반)		
요 일		시 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신청서

수 강 생	강좌명	() 반)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수 강 료	금	원정 (W)		
감 면 료	전액감면			
실 제 수강료	금	원정 (W)		
계좌입금 통 장	거 래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면제사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 출 서 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국가유공자증 가족: 국가유공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기준)	신분증
	다문화가족(다문화본인,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1 가정 당 연 1회에 한함)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 강 생	강 좌 명	(반)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납부수강료	금 원정 (W)			
반환사유			수강료 납부일	
공제액	금 원정 (W)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 내역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			
반환액	금 원정 (W)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앞면)

(뒷면)

서 약 서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본인은(본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평생학습관 시설 및 장비·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같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용중지 명령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명 (단체명)		연락처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일시			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유 선 :
	단체명			무 선 :
	주 소		이 메 일	
사용시설			사용료 납부일	20 . . .
납 부 한 사 용 료	금 원정 (₩ 원정)		사용기간	
반환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남동구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대장

[illegible]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외부 대관 근거 및 기준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해 열려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 주요내용

- 수강료 감면 대상 조항 변경 :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제2호)
- 수강료 반환 사유 추가 및 기준 변경 : (제9조, 별표 4)
- 강사 결격사유 추가 : (제11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기준 변경 : (제18조)
-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 : (제19조)
- 수강료 기준 변경 : (별표 3)
- 시설 사용료 변경 : (별표 5)